|  |  |  |
| --- | --- | --- |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의 몇가지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53호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6]36호)에 근거하여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징수관리 관련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해외의 업체 또는 개인이 행한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용역•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1) 해외로 반출되는 서신, 소포를 위하여 해외에서 제공되는 우정(郵政)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  (2) 국내의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공사시공 현장이 해외에 있는 건설 용역, 공사 감리 용역;  (3) 국내의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공사, 광물자원이 해외에 있는 공사 측량•탐사 용역;  (4) 국내의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회의•전시 현장이 해외에 있는 회의•전시 서비스.  2. 기타 개인이 임대료 일시불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취득한 임대료 소득은 임대료와 대응되는 임대기간 내에 균등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후의 월 임대료 소득이 3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형박리기업 증치세 면제 특혜 정책을 누릴 수 있다.  3. 단일 용도 선불카드(이하 '단일 용도 카드'로 약칭)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단일 용도 카드 발행기업 또는 판매기업(이하 '카드 판매사'로 통칭)이 단일 용도 카드의 판매 또는 단일 용도 카드 소지자의 충전을 통해 취득한 선수금은 증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카드 판매사는 이 공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카드 구매자, 충전자에게 증치세 일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일 용도 카드라 함은 카드 발행기업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발행한 본 기업, 본 기업이 소속된 그룹 또는 동일 브랜드를 공유하는 특허경영 시스템 내에서 화물 또는 용역•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불 증빙을 지칭한다.  카드 발행기업이라 함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단일 용도 카드를 발행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카드 판매기업이라 함은 그룹 카드 발행기업 또는 브랜드 카드 발행기업의 지정을 받아 단일 용도 카드의 판매, 충전, 분실신고, 카드 재발급, 카드 환불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본 그룹 또는 동일 브랜드를 공유하는 특허경영 시스템 내의 기업을 지칭한다.  (2) 카드 판매사가 단일 용도 카드의 발행 또는 판매 아울러 관련 자금의 수불금•결산 업무를 통해 취득한 수수료, 결산비, 용역비, 관리비 등 수입은 현행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카드 소지자가 단일 용도 카드를 사용하여 화물 또는 용역•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화물 또는 용역•서비스 판매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카드 소지자에게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판매자와 카드 판매사가 동일 납세자가 아닌 경우 판매자는 카드 판매사가 판매대금 결산금을 입금한 후 카드 판매사에게 증치세 일반 영수증을 발행하고 비고란에 '선불카드 결산금 입금 확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카드 판매사가 판매자로부터 취득한 증치세 일반 영수증은 그가 단일 용도 카드 판매 또는 단일 용도 카드 충전을 통해 취득한 선수금의 증치세 비과세 증빙으로써 검사를 대비하여 보관 및 비치하여야 한다.  4. 지불기구의 선불카드(이하 '다용도 카드')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지불기구가 다용도 카드 판매를 통해 취득한 등가의 인민폐 자금 또는 다용도 카드 소지자의 충전을 통해 취득한 충전 자금은 증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지불기구는 이 공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카드 구매자, 충전자에게 증치세 일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불기구라 함은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지불업무허가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선불카드 발행 및 접수' 업무의 취급을 허가받은 카드 발행기구와 '선불카드 접수' 업무의 취급을 허가받은 접수기구를 지칭한다.  다용도 카드라 함은 카드 발행기구가 특정의 매개물과 형식으로 발행하는 카드 발행기구 이외의 제3자로부터 화물 또는 용역•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선불가치를 지칭한다.  (2) 지불기구가 다용도 카드의 발행 또는 접수 아울러 관련 자금의 수불금•결산 업무를 통해 취득한 수수료, 결산비, 용역비, 관리비 등 수입은 현행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카드 소지자가 다용도 카드를 사용하여 지불기구와 제휴계약을 체결한 특약상가에서 화물 또는 용역•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특약상가는 현행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카드 소지자에게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특약상가는 지불기구가 판매대금 결산금을 입금한 후 지불기구에게 증치세 일반 영수증을 발행하고 비고란에 '선불카드 결산금 입금 확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불기구가 특약상가로부터 취득한 증치세 일반 영수증은 그가 다용도 카드 판매 또는 다용도 카드 충전을 통해 취득한 선수금의 증치세 비과세 증빙으로써기 검사를 대비하여 보관 및 비치하여야 한다.  5. 업체가 그가 보유한 매각제한주의 유통 금지가 해제된 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가를 확정한다.  (1) 상장회사가 지분분할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식 거래 재개 전에 형성된 기존 비유통주, 주식 거래 재개일부터 유통 금지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상기 주식의 배당주와 전환주는 해당 상장회사의 지분분할개혁이 완료된 직후의 첫번째 거래 재개일의 시초가를 매입가로 한다.  (2) 회사의 최초 주식 공개발행에 따라 상장하여 형성된 매각제한주, 상장일부터 유통 금지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상기 주식의 배당주와 전환주는 행당 상장회사의 최초 주식 공개발행(IPO) 시의 발행가를 매입가로 한다.  (3) 상장회사의 중대한 자산구조조정으로 인해 형성된 매각제한주, 주식 거래 재개일부터 유통 금지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상기 주식의 배당주와 전환주는 중대한 자산구조조정으로 인해 해당 상장회사의 주식 거래가 중지되기 직전 거래일의 마감가를 매입가로 한다.  6. 은행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간별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이자 결산일 당일에 수취한 이자수입 전액을 이자 결산일이 소속된 기간의 매출액에 산입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산정 및 납부하여야 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 실시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 및 관련 문건의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증치세를 납부하는 증치세 납세자의 경우 그가 취득한 증치세 과세대상소득, 소비세 과세대상소득 전액의 세금을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8. <납세자가 소재 현(구•시) 이외의 지역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증치세 징수관리 잠정방법>(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17호로 공표) 제7조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소재 현(구•시) 이외의 지역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는 건설 용역 발생지의 관할 국세기관에 세금 예납 시 <예납 증치세 세금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발주자와 체결한 건설계약 복사본 (납세자의 공인 날인);  (2) 하도급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복사본 (납세자의 공인 날인);  (3) 하도급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수증 복사본(납세자의 공인 날인).  9.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 전면 추진 과정에서의 조세 징수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23호) 첨부서류 <상품 및 용역•서비스 조세 분류 및 코드(시범시행)> 중의 분류코드를 다음 과 같이 조정하며 납세자는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V2.0.11)으로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1) 3010203 '수로운송 정기용선 업무' 아래에 301020301 '수로 여객운송 정기 용선 업무'와 301020302 '수로 화물운송 정기용선 업무'를 추가하고; 3010204 '수로운송 항해용선 업무' 아래에 301020401 '수로 여객운송 항해용선 업무'와 301020402 '수로 화물운송 항해용선 업무'를 추가하며; 301030103 '항공운송 포괄임대 업무' 아래에 30103010301 '항공 여객운송 포괄임대 업무'와 30103010302 '항공 화물운송 포괄임대 업무'를 추가한다.  (2) 30105 '無 운송수단 운송 업무' 아래에 3010502 '無 운송수단 육로운송 업무', 3010503 '無 운송수단 수로운송 서비스', 3010504 "無 운송수단 항공운송 서비스', 3010505 '無 운송수단 관로수송 서비스' 및 3010506 '無 운송수단 복합운송 서비스'를 추가한다.  코드 3010501 '무선(無船) 운송'의 사용을 중단한다.  (3) 301 '교통운송 서비스' 아래에 30106 '복합운송 서비스'를 추가하여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한 여객•화물 운송 업무 활동에 사용한다.  30106 '복합운송 서비스' 아래에 3010601 '여객 복합운송 서비스'와 3010602 '화물 복합운송 서비스'를 추가한다.  (4) 30199 '기타 운송 서비스' 아래에 3019901 '기타 여객운송 서비스'와 3019902 '기타 화물운송 서비스'를 추가한다.  (5) 30401 '연구개발 및 기술 서비스' 아래에 3040105 '전문기술 서비스'를 추가한다.  코드 304010403 '전문기술 서비스'의 사용을 중단한다.  (6) 304050202 '부동산 영업리스' 아래에30405020204 '상업•영업용 부동산 영업리스 서비스'를 추가한다.  (7) 3040801 '기업 관리 서비스' 아래에304080101 '부동산 관리 서비스'와 304080199 '기타 기업 관리 서비스'를 추가한다.  (8) 3040802 '중개•대리 서비스' 아래에 304080204 '인력자원 아웃소싱 서비스'를 추가한다.  (9) 3040803 '인력자원 서비스' 아래에 304080301 '노무파견 서비스'와 304080399 '기타 인력자원 서비스'를 추가한다.  (10) 30601 '대출 서비스' 아래에 3060110 '고객 대출'을 추가하여 기업, 개인 등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 제공, 어음 할인 등 상황에 사용하며; 3060110 '고객 대출' 아래에 306011001 '기업 대출', 306011002 '개인 대출', 306011003 '어음 할인'을 추가한다.  (11) 6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비과세 항목'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대금을 수취하였으나 화물, 과세대상 노무, 용역•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 판매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한다.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비과세 항목' 아래에 601 '선불카드 판매와 충전', 602 '자체개발 부동산 판매 선수금', 603 '영업세를 기(旣) 신고•납부하였으나 영수증을 개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영수증 보충발급'을 추가한다.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비과세 항목'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영수증의 세율 란에 '비과세'를 기입하여야 하며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이 공고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처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016년 5월 1일 전에 납세자가 이 공고 제2조, 제5조, 제6조에 규정한 과세대상 행위를 행하였으나 그 전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공고의 규정에 비추어 영업세를 납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 8월 18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营改增试点若干征管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53号  根据《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全面推开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财税〔2016〕36号），现将营改增试点有关征管问题公告如下：  　　一、境外单位或者个人发生的下列行为不属于在境内销售服务或者无形资产：  　　（一）为出境的函件、包裹在境外提供的邮政服务、收派服务；  　　（二）向境内单位或者个人提供的工程施工地点在境外的建筑服务、工程监理服务；  　　（三）向境内单位或者个人提供的工程、矿产资源在境外的工程勘察勘探服务；  　　（四）向境内单位或者个人提供的会议展览地点在境外的会议展览服务。  　　二、其他个人采取一次性收取租金的形式出租不动产，取得的租金收入可在租金对应的租赁期内平均分摊，分摊后的月租金收入不超过3万元的，可享受小微企业免征增值税优惠政策。  　　三、单用途商业预付卡（以下简称“单用途卡”）业务按照以下规定执行：  　　（一）单用途卡发卡企业或者售卡企业（以下统称“售卡方”）销售单用途卡，或者接受单用途卡持卡人充值取得的预收资金，不缴纳增值税。售卡方可按照本公告第九条的规定，向购卡人、充值人开具增值税普通发票，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  单用途卡，是指发卡企业按照国家有关规定发行的，仅限于在本企业、本企业所属集团或者同一品牌特许经营体系内兑付货物或者服务的预付凭证。  　　发卡企业，是指按照国家有关规定发行单用途卡的企业。售卡企业，是指集团发卡企业或者品牌发卡企业指定的，承担单用途卡销售、充值、挂失、换卡、退卡等相关业务的本集团或同一品牌特许经营体系内的企业。  　　（二）售卡方因发行或者销售单用途卡并办理相关资金收付结算业务取得的手续费、结算费、服务费、管理费等收入，应按照现行规定缴纳增值税。  （三）持卡人使用单用途卡购买货物或服务时，货物或者服务的销售方应按照现行规定缴纳增值税，且不得向持卡人开具增值税发票。  　　（四）销售方与售卡方不是同一个纳税人的，销售方在收到售卡方结算的销售款时，应向售卡方开具增值税普通发票，并在备注栏注明“收到预付卡结算款”，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  　　售卡方从销售方取得的增值税普通发票，作为其销售单用途卡或接受单用途卡充值取得预收资金不缴纳增值税的凭证，留存备查。  　　四、支付机构预付卡（以下称“多用途卡”）业务按照以下规定执行：  　　（一）支付机构销售多用途卡取得的等值人民币资金，或者接受多用途卡持卡人充值取得的充值资金，不缴纳增值税。支付机构可按照本公告第九条的规定，向购卡人、充值人开具增值税普通发票，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  　　支付机构，是指取得中国人民银行核发的《支付业务许可证》，获准办理“预付卡发行与受理”业务的发卡机构和获准办理“预付卡受理”业务的受理机构。  多用途卡，是指发卡机构以特定载体和形式发行的，可在发卡机构之外购买货物或服务的预付价值。  　　（二）支付机构因发行或者受理多用途卡并办理相关资金收付结算业务取得的手续费、结算费、服务费、管理费等收入，应按照现行规定缴纳增值税。  　　（三）持卡人使用多用途卡，向与支付机构签署合作协议的特约商户购买货物或服务，特约商户应按照现行规定缴纳增值税，且不得向持卡人开具增值税发票。  　　（四）特约商户收到支付机构结算的销售款时，应向支付机构开具增值税普通发票，并在备注栏注明“收到预付卡结算款”，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  　　支付机构从特约商户取得的增值税普通发票，作为其销售多用途卡或接受多用途卡充值取得预收资金不缴纳增值税的凭证，留存备查。  　　五、单位将其持有的限售股在解禁流通后对外转让的，按照以下规定确定买入价：  　　（一）上市公司实施股权分置改革时，在股票复牌之前形成的原非流通股股份，以及股票复牌首日至解禁日期间由上述股份孳生的送、转股，以该上市公司完成股权分置改革后股票复牌首日的开盘价为买入价。  　　（二）公司首次公开发行股票并上市形成的限售股，以及上市首日至解禁日期间由上述股份孳生的送、转股，以该上市公司股票首次公开发行（IPO）的发行价为买入价。  　　（三）因上市公司实施重大资产重组形成的限售股，以及股票复牌首日至解禁日期间由上述股份孳生的送、转股，以该上市公司因重大资产重组股票停牌前一交易日的收盘价为买入价。  　　六、银行提供贷款服务按期计收利息的，结息日当日计收的全部利息收入，均应计入结息日所属期的销售额，按照现行规定计算缴纳增值税。  　　七、按照《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及相关文件规定，以1个季度为纳税期限的增值税纳税人，其取得的全部增值税应税收入、消费税应税收入，均可以1个季度为纳税期限。  　　八、《纳税人跨县（市、区）提供建筑服务增值税征收管理暂行办法》（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17号发布）第七条规定调整为：  　　纳税人跨县（市、区）提供建筑服务，在向建筑服务发生地主管国税机关预缴税款时，需填报《增值税预缴税款表》，并出示以下资料：  　　（一）与发包方签订的建筑合同复印件（加盖纳税人公章）；  　　（二）与分包方签订的分包合同复印件（加盖纳税人公章）；  　　（三）从分包方取得的发票复印件（加盖纳税人公章）。  　　九、《国家税务总局关于全面推开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23号）附件《商品和服务税收分类与编码（试行）》中的分类编码调整以下内容，纳税人应将增值税税控开票软件升级到最新版本（V2.0.11）：  　　（一）3010203“水路运输期租业务”下分设301020301“水路旅客运输期租业务”和301020302“水路货物运输期租业务”；3010204“水路运输程租业务”下设301020401“水路旅客运输程租业务”和301020402“水路货物运输程租业务”；301030103“航空运输湿租业务”下设30103010301“航空旅客运输湿租业务”和30103010302“航空货物运输湿租业务”。  　　（二）30105“无运输工具承运业务”下新增3010502“无运输工具承运陆路运输业务”、3010503“无运输工具承运水路运输服务”、3010504“无运输工具承运航空运输服务”、3010505“无运输工具承运管道运输服务”和3010506“无运输工具承运联运运输服务”。  　　停用编码3010501“无船承运”。  　　（三）301“交通运输服务”下新增30106“联运服务”，用于利用多种运输工具载运旅客、货物的业务活动。  　　30106“联运服务”下新增3010601“旅客联运服务”和3010602“货物联运服务”。  　　（四）30199“其他运输服务”下新增3019901“其他旅客运输服务”和3019902“其他货物运输服务”。  　　（五）30401“研发和技术服务”下新增3040105“专业技术服务”。  　　停止使用编码304010403“专业技术服务”。  　　（六）304050202“不动产经营租赁”下新增30405020204“商业营业用房经营租赁服务”。  　　（七）3040801“企业管理服务”下新增304080101“物业管理服务”和304080199“其他企业管理服务”。  　　（八）3040802“经纪代理服务”下新增304080204“人力资源外包服务”。  　　（九）3040803“人力资源服务”下新增304080301“劳务派遣服务”和304080399“其他人力资源服务”。  　　（十）30601“贷款服务”下新增3060110“客户贷款”，用于向企业、个人等客户发放贷款以及票据贴现的情况；3060110“客户贷款”下新增306011001“企业贷款”、306011002“个人贷款”、306011003“票据贴现”。  　　（十一）增加6“未发生销售行为的不征税项目”，用于纳税人收取款项但未发生销售货物、应税劳务、服务、无形资产或不动产的情形。  　　“未发生销售行为的不征税项目”下设601“预付卡销售和充值”、602“销售自行开发的房地产项目预收款”、603“已申报缴纳营业税未开票补开票”。  　　使用“未发生销售行为的不征税项目”编码，发票税率栏应填写“不征税”，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  　　十、本公告自2016年9月1日起施行，此前已发生未处理的事项，按照本公告规定执行。2016年5月1日前，纳税人发生本公告第二、五、六条规定的应税行为，此前未处理的，比照本公告规定缴纳营业税。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6年8月18日 |